

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정기검사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
			90일
신청인	상호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	전화번호	
	대표자	생년월일	
	사업소명	담당부서	
		담당자	
	사업장소	전화번호	
	허가시설범위		
검사회망장소	검사회망일자		

「원자력안전법」 제6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1.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1부 2.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		
처리절차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	→ 서류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	→ 현장확인 및 검사결과 조치 원자력안전위원회	→ 결과 확인 신청인